서울 근교 산림 생태조사결과

'살모사'가 살고 있다.

서울시 주변 관악·청계·대모·아차산 등에 살모사가 살고 있으며, 꾀꼬리는 물론 말똥가리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년여 동안 관악산 등 서울 근교 4개 산림의 생태계 조사결과를 최근 밝힘에 따라 확인됐다.

조사결과 따르면 이들 산림에는 환경부 고시 한국특산식물이자 희귀식물인 끈끈이 주걱의 국내최대 집단분포지가 처음 발견됐다.

이 집단 분포지에는 한국특산식물들인 끈끈이 주걱 5000개체, 이삭귀개 300개체, 땅귀개 2000개체, 물매화 70개체가 100m^2 면적에서 자라고 있었다.

서울시는 저지대 습지주변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이 식물들이 서울 근교의 산 암석지 주변에서 발견돼 학술적 가치와 생물다양성 보전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 계곡에서는 버들치와 한국특산종인 미유기 등 물고기 7종이 살고 있었고 도룡뇽, 두꺼비 등 양서류도 6종 발견됐다.

또 천연기념물 제323호인 황조롱이를 비롯해 말똥가리, 오색딱따구리 등 41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고슴도치, 너구리, 오소리 등 포유류도 13종 발견됐다.

까치 살모사 ▼

서울시는 "서울시내 산

은 환경오염이 심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등산로에서 10m만 벗어나면 원시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며 "조사한 산림내 생물다양성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식생도, 식생본포도, 지형분석도 등을 그려 과학적인 산림생태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생태조사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7곳 발견

한·일 합동 반달가슴곰 생태조사에 참여한 일본 반달가슴곰연구소 마이타 카즈히코(49)소장은 최근 "지리산 서남부 일대에 최소 5마리, 많게는 10여 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천은사 계곡 곰발톱자국 진위 논란 이후 잠잠해진 지리산 곰 서식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와 환경부, 일본 반달가슴곰연구소 등 5개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조사반은 구례와 하동·남원군 등 지리산 서남부 지역에 대해 반달곰 흔적을 집중조사한 결과 곰발톱자국 등 7군데서 반달곰의 흔적을 발견했다.

조사팀은 지리산 영신봉 아래 벚나무 숲 2곳에서 8개 가량의 상사리(반달곰이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새집모양의 나뭇가지 뭉치)를 발견했으며, 이는 집단서식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삼도봉 아래 이끼가 낀 바위에서는 불과 3~4일전에 미끄러진 흔적을 발견해 반달가슴곰의 지리산 서식을 확신하게 해줬다.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 우두성 회장은 "생태조사 결과 최근 몇년간 일곱군데서 곰이 남긴 흔적을 발견해 생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반달곰 이동통로로 추정되는 14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추적해온 마이타 카즈히코 소장도 분비물과 털, 동면흔적, 발톱자국 등을 발견하고 반달가슴곰의 서식을 확신했다.

〈 한겨레신문 〉

"반달곰은 살아있다" … 밀렵꾼 4명 유죄선고

'반달곰은 살아있다.' 우리나라에서 15년째 종적이 묘연한 반달곰의 존재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閔亨基 · 민형기 부장판사)는 최근 지리산 일대에서 곰사냥용 덫을 이용,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달곰을 포획하려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구속기소

된 김모(65·경남 산청군)씨등 밀렵업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5개월간에 걸친 지리산 현지 잠복수사 끝에 검거해 지난해 7월 기소한 이 사건을 배당받고 과연 김씨 등이 잡으려한 반달곰이 생존해 있는지를 놓고 깊은 고민을 시작했다.

천연기념물 329호인 반달곰은 지난해 8월 환경부가 국내에 10여마리가 살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83년 설악산에서 총에 맞은 채 발견된 후에는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반달곰이 지리산 어딘가에 살고 있다면 법리적으로 김씨 등을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미 멸종됐다면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잡으려한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의 '不能犯(불능범)'에 해당될 수 있어 처벌이 어려워진다.

판사들의 의견도 "이미 멸종해 존재하지도 않는 동물을 잡으려는 행위가 처벌이 가능하냐"는 불가론으로 기울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환경부와 산림청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반달곰의 생존을 전제로 김씨 등을 기소한 검찰측의 의견을 정밀 검토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목격담과 환경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곰의 배설물, 곰이 비벼댄 나무에 남은 털과 발자국 등을 찍은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 반달곰의 생존을 주장했다.

선고공판을 앞두고 현지 답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고민했던 재판부는 결국 검찰 및 환경부와 산림청 등의 이같은 주장을 인용, '반달곰은 살아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귀한 반달곰이 피고인들의 밀렵행위로 멸종될 위험성이 큰만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문화일보 〉

겨울 철새떼 "천수만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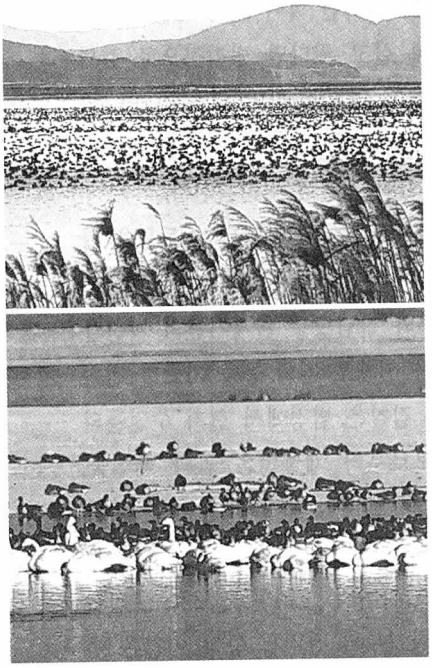

환경부는 96년 10월부터 97년 4월까지 한강하구와 낙동강하구 등 전국 13개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제2차 전국 겨울철새 동시 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이들 지역에서 모두 115종, 552만5019마리의 겨울철새를 관찰했다고 최근에 밝혔다.

이번 센서스는 경희대 한국조류연구소 조사팀이 매달 2차례씩 모두 13차례에 걸쳐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망원경으로 조류의 종을 확인한

뒤 개체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관찰된 철새수를 주요 철새도래지별로 보면 천수만이 전체의 38.8%인 214만2883마리로 가장 많았고 아산만이 72만6664마리, 금강 45만5533마리, 만경강 37만 1669마리, 대호 32만7069마리 차례로 나타나 서해안지역이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차지했다.

또 관찰된 조류의 종수를 보면 천수만이 총 115종 가운데 111종이 관찰돼 가장 많았으며, 아산만 105종, 만경강 99종, 한강 95종, 금강 92종 차례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겉으로 보기에는 국내 겨울철새 월동지로 천수만과 아산만, 금강, 만경강, 대호, 한강, 낙동강 차례로 중요한 곳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우포와 주남저수지는 종수와 개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지만 내륙의 철새 도래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철새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 한겨레신문 〉

뒷산에 쓰레기 버려도 최고 100만원 벌금

앞으로는 마을 뒷동산에 쓰레기를 몰래 갖다버릴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

적발되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최근 그동안 국·공립공원 등 특정지역에만 적용했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부과 대상지역을 뒷동산을 포함한 전국 산림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 뒷동산에 불법 쓰레기 투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나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뒷동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릴 경우 20만원, 차량을 이용해 대량 불법투기하면 1백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전국 어느 산이라도 놀러갔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10만원(종전 3만~15만원), 봉지에 담아 버리면 20만원(종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림청은 입산통제지역내 무단취사와 통제지역밖 무단취사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각각 20만원과 10만원으로 2배 올렸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산림법 및 시행령, 규칙을 이미 개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야생동물 쫓아낼 경우
최고 2백만원 과태료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영농피해를 우려해 철새와 멧돼지등 야생동물을 쫓아낼 경우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환경부는 최근 겨울철 철새가 날아들고 멧돼지가 먹이를 찾는 계절을 맞아 서식지에 불을 지르는등 야생동물을 고의로 쫓아내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환경단속을 펴도록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같은 엄한 행정단속은 올초 영농피해 때문에 '철새야 오지마라' 며 주남저수지 갈대밭에 불을 지른행위 등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서 금속성 소리나 연기, 불, 악취를 통해 철새나 멧돼지를 쫓아내고 서식지를 훼손할 경우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와함께 생태계보전지역에서 풀이나 입목, 대나무등 먹이식물을 채취 또는 벌채하고 가축을 방목해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야생동물의 서식장소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에서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철새도래지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해 지역주민들이 갈대밭에 불을 지르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히며 "야생동물보호조치와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토지임대와 보상등 주민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